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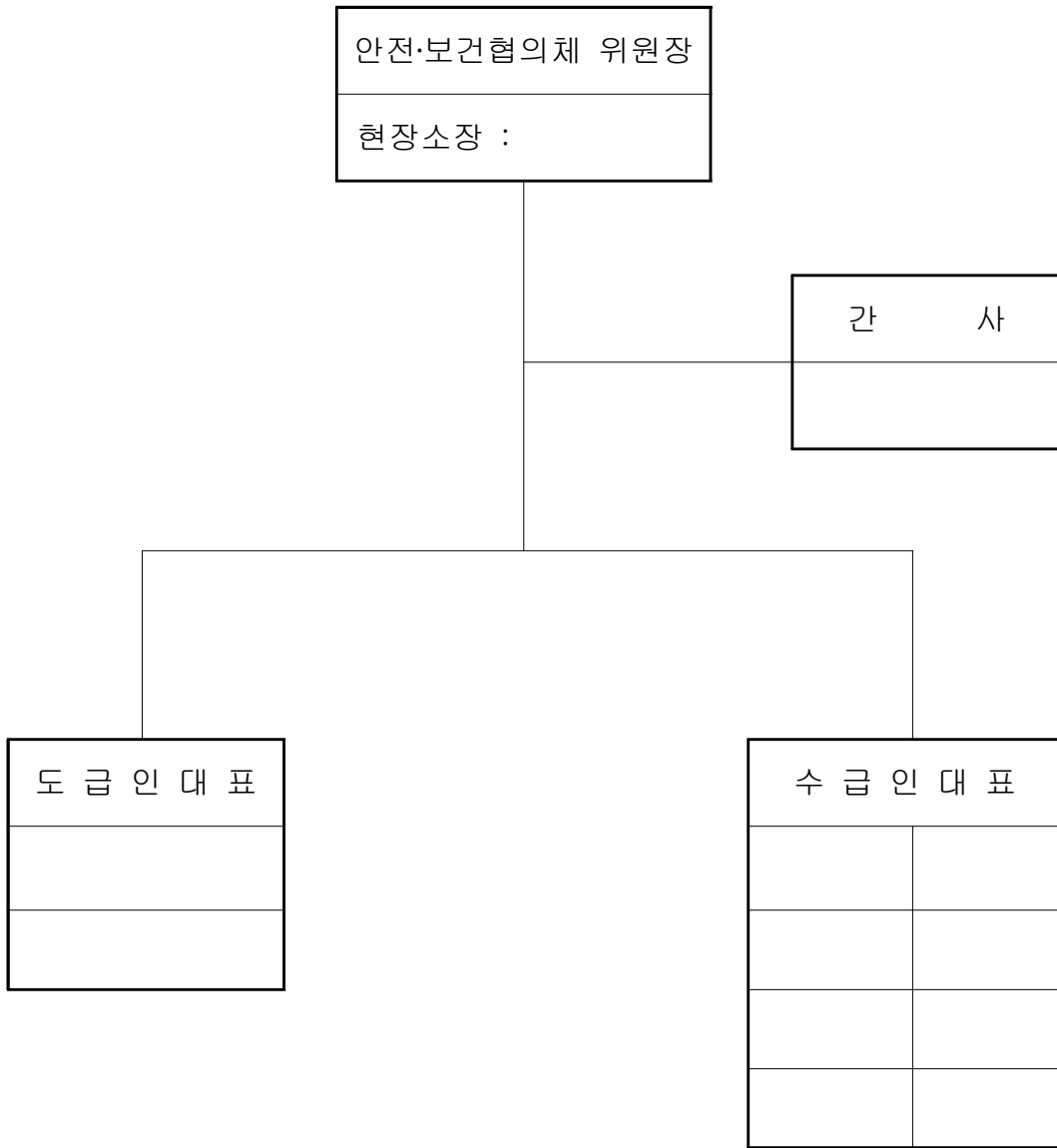
4. 협의체 회의

1. 대상사업장(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1호)
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
2. 구성 및 운영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, 제3항)
 - 구 성 :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
 - 운 영 : **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**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
3. 협의 사항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)
 - 가. 작업의 시작시간
 - 나.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
 - 다. 재해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
 - 라. 작업장에서의 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 - 마.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
4. 기본 사항
 - 가. 수급인인 사업주(협력업체)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실시하는 순회점검(2일에 1회이상)을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나.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다. 도급인인 사업주는 발파작업, 화재발생, 토석의 붕괴 등의 경우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하여 수급인인 사업주 및 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5. 세부 사항
 - 가. 작업의 시작 및 종료시간
 - 나. 작업장간의 연락방법
 - 다. 재해발생 위험의 대피방법
 - 라. 안전보건에 관한 운영
 - 마.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
 - 바.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
 - 사.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

※ 협의체 회의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벌금

※ 안전협의체 조직표

예시 1)



예시 2)

협업체 회의 진행요령

회의 순서	담당	진행
1. 개회	안전관리자	- 지금부터 제○차 안전협업체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.
2. 인사	총괄책임자	- 현장소장이 전반적으로 그간의 협력업체 및 관리감독자들의 노고에 대한 인사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한다.
3. 보고사항	안전관리자	- 금일 회의 참가대상인원과 불참인원에 대한 보고 - 전회차 협업체 협의사항에 대한 결과분석보고 - 주간 점검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에 대한 보고 - 금일 공동점검사항에 대한 보고 - 기간 중 발생한 재해 및 타현장의 재해사례 분석보고 - 기타 노동부·공단 및 본사의 주요 지시사항 전파
4. 보고사항에 대한 확인	총괄책임자 공정별 관리책임자 협력업체소장	- 안전관리자의 보고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당협력업체 및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세밀히 듣는다. - 해당소관분야의 문제점 및 사항을 상호 충분히 조정 한다. - 해당소관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와 작업중 조치해야할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듣는다.(가급적 협력업체에 의한 의견 및 요구사항을 상세히 듣는다.)
5. 금주의 협의 안건 제시 및 협의	안전관리자 협력업체 관리감독자	-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안건 제시 - 추가되는 지시사항이나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 등 건설적인 사항을 제시토록 유도 - 현재까지 잘되지 않은점(가급적 협력업체대표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)
6. 협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 및 협력업체의 건의사항	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협력업체소장 기타관리감독자	- 협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 토의 - 실천사항에 따른 상호 협조 문제 - 각 공종별 관리감독자 의견 - 기타사항
7. 재해사례 전파 /중요사항전파	안전관리자	- 발생한 재해의 원인분석 및 타현장 재해사례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- 기타 노동부·공단 및 본사의 기간 중 지시된 사항을 전파
8. 폐회	안전관리자	- 금일 회의사항의 종합적인 요약 및 회의 종료 선포 - 회의사항 기록 및 참가자 서명 날인

예시 3)

() 월 협의체 회의록

회의 일자	20 년 월 일 00:00 ~ 00:00				
회의 장소	현장 사무실				
참 석 자	도 급 인		수 급 인 (협력업체) 대 표		
	성 명	서 명	업체명	성 명	서 명
회의 내용	<p>1) 지급된 개인보호구 착용 준수토록 근로자 위원 협조 요청함</p> <p>2) 아침 출근 시 불피우기 등 금지 하도록 함</p> <p>3)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에 대비 사용전 확인</p> <p>4) 현장내 차량운행 시 증장비들과 충돌 주의 교육</p> <p>5) 올바른 작업방법과 작업계획에 의거 작업 하도록 함</p> <p>6) 재해사례 소개 및 안전대책에 관한 예방교육철저</p> <p>7) 특정공사 작업 시 특별교육 실시 (ex:발파작업,비계,동바리,목재동근톱사용,2m이상굴착 등)</p> <p>8) 작업의 시작 및 종료시간 (07시20분 ~ 17시30분) 이행</p>				
협 의 체 회 의 사 진					

예시 4)

() 월 협의체 회의록

회 의 일 자	20 년 월 일 : ~ :				
회 의 장 소	현 장 사 무 실				
참 석 자	도 급 인		수 급 인 (협력업체) 대 표		
	성 명	서 명	업 체 명	성 명	서 명
협 의 내 용	1. 작업의 시작시간 2.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. 재해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. 작업장에서의 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.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				
회 의 내 용	 				
협 의 체 회 의 사 진	 				